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선원보험급여 관련 진료기록 제공
법적근거 마련〉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34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9. ~ 19. (생략) ④·⑤ (생략)	<u>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을 진료한 의사 등에 대하여 그 어선원등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는 경우</u> 9. ~ 1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²⁾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각 호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도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략)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 〉

환자 가족	· 환자의 가족 등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증명서만 첨부)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급여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된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 관련 요청의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관련 요청의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법원 등	·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106조), 검사의 압수·수색·검증(215조) 등 ·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압수(146조), 군검사의 압수·수색·검증(254조) 등 ·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보험 및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기록을 보내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조사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등	·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에 관련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와 관련된 경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등에 관한 경우

□ 이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체계는 2009. 1. 30. 「법률 제93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종전에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도 열람 등이 가능했던 규정을 현행과 같이 열거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의료법의 규율 하에서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한 것임.³⁾

3) 법제처는 “다른 법령에 진료기록 등의 요청 근거가 있더라도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이 달라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2015.7.28. 법제처 법령해석 15-0373 참조).

□ 개정안이 예외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재해보험’)의 경우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3항제8호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성이 높음.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어선원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중앙회는 의료기관에 어선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어선원재해보험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⁵⁾ 수협중앙회가 어선원재해보험 급여지급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⁶⁾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를 근거로 거부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요양 중인 재해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4)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생 략)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3.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진단서, 초진기록지, 간호기록, 수술기록지, 의사지시지, 검사결과지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은 2004년 당시 「선원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원화⁷⁾되어 있던 어선원재해보험을 일원화한 것으로,⁸⁾ 원양어선과 수산물 운송을 제외한 모든 어선에 대하여 기존의 「선원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대신하여 적용되고 있음.

< 어선원재해보험 개요 >

- 법령/도입년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04년
- 사업목적 :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업인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
- 국고지원 : ('23) 1,338억원(어선원 463억, 어선 398억, 사업비 362억)
- 사 업 자 : 수협중앙회
- 보험금 지급 : ('22) 어선원보험 989억원, 어선보험 963억원

이러한 연혁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험 모두 정책성 보험으로서 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음.

- 어선원재해보험은 해상근로자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재해보상 관계를 규정한 「선원법」의 기준⁹⁾에 따라 재해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공영보험의 역할을 담당하며,¹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관계를 공영보험화한 것임.

7) 25톤 이상인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은 「선원법」에 의하여, 25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승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8) 당시 보험운영이 이원화되어 혼선이 있고,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며 보험에 가입했다라도 선주가 임의로 책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가입함에 따라 어선원과 선주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어선원의 경우 어획한 물고기의 판매 수익금을 나누는 비율급 방식으로 임금산정이 곤란하여 선주가 임의로 책정함에 따라 보상금액이 적었음) 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161906]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심사보고서, 2003.2.)

9)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에 대해서도 적용됨.

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체 근로자의 일반적 상황을 고려한 대비하여 어선원재해보험은 임금산정의 곤란, 높은 어선사고율, 어선원의 빈번한 승하선, 사업장의 유동성 등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선원 및 어선소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행방불명보상, 소지품유실보상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어선원재해보험의 차이>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재해보험
근거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보험사업 시행	근로복지공단 (정부위탁)	○ 수협중앙회 (정부위탁)
가입대상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 연근해 어선 (제외대상) 원양어업 허가어선,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임의가입대상) 3톤미만 어선, 가족어선원만 승선 어선, 내수면어업 어선, 관리선,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 교습어선
가입방법	강제가입 (가입미신고시도 보상)	○ 당연 및 임의가입으로 구성 - 당연가입: 미가입시, 보험료 미납부시 보상 - 임의가입 : 가입시 보상
가입금액	근로자임금전액	○ 어선원의 임금전액 - 실질임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임금
지급사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책임	○ 선원법상 선주 재해보상책임
지급금액	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금액의 약 10% 정도 상회	○ 선원법상의 보상규정 완전이행
보상합의	보험금에 의한 보상합의	○ 보험금에 의한 보상합의 - 보험사업자는 선주와 합의 없이 선원에 보상
보험료 구성	순보험료(85%)+부가보험료(15%)	○ 순보험료(80%)+부가보험료(20%)
보험료 국고보조	없 음	○ 톤급별 차등지원(총보험료) 15%~71% 범위내 지원
기금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95조~102조) 보험료, 수익금, 적립금, 잉여금, 출연금, 차입금	○ 손실보전준비금(제13~14조) 잉여금, 수익금, 출연금, 차입금
미가입시	가입여부 불문 보험금 지급 -국세체납의 예에 준해 보험료 징수	○ 당연가입 : 보험금 지급 ○ 임의가입 : 보험금 미지급 - 당연가입대상자는 국세체납의 예에 준해 보험료 징수

- 따라서 어선원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21조제3항(예외규정)에 포함하여 보험사업 시행주체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찬성)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따라서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기 이루어지기 위해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의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됨.

2) 해양수산부 의견(찬성)

- 어선원보험금 관련 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에 대한 어업인 불편
및 서류발급 지연에 따른 보상지연 민원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함.

3) 대한의사협회 의견(반대)

□ 의료법에서 환자진료기록의 제3자 열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하면서 그 처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는 기본권 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사익보다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 이외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3자 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행정적 편의라는 공익보다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환자의 권리 침해가 현저하므로 상기 개정안에 반대함.

4) 대한병원협회 의견(보완 필요)

□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원활하게 진료기록의 사본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한 자에게 발급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견(찬성)

□ 어선원보험급여 관련하여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특정 직역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를 만드는 만큼 다른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은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자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요(보건복지부)

- 법령/도입년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04년
- 사업목적 :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업인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
- 국고지원 : ('23) 1,338억원(어선원 463억, 어선 398억, 사업비 362억)
- 사업자 : 수협중앙회
- 보험금 지급 : ('22) 어선원보험 989억원, 어선보험 963억원

< 어선원보험 >

☐ (가입대상)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 당연가입 : 3톤 이상 어선

* 임의가입 : 3톤 미만 어선, 가족어선원 승선 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어장 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선 등

☐ (재해보상) 어선원이 조업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이행

* 보험급여 : 요양·상병·장해·일시보상·유족·장례비·행방불명·소지품 유실급여

☐ (국고보조) 톤급별로 순보험료 0~70%, 부가보험료 75% 보조

* 순보험료 : 10톤 미만 70%, 10~30톤 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 어선보험 >

☐ (가입대상)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 사유재산인 어선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톤급 어선을 임의가입 대상으로 함

☐ (재해보상)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

- 담보범위 : 전손 및 분손 보험금, 충돌손해배상, 임의구조비 등
- 특약담보 : 자기부담금보상특약, 기관내적단독사고보상특약 등

☐ (국고보조) 톤급별로 순보험료 0~70%, 부가보험료 75% 보조

* 순보험료 보조 : 10톤 미만 70%, 10~20톤 미만 60% 등